

2026년도 하반기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공고

2026년도 하반기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2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채용 예정 인원 및 근무지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	근무지	주요업무
청원경찰	4명	부산광역시 (본청 및 사업소)	▶ 부산광역시 본청 및 사업소의 방호·보안 등을 위한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업무 - 청사방호, 주·야간 순찰 등 - 청사 내·외 질서유지, 불법행위 계도 등

2 응시자격

- **결격사유**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및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 제3호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관계 법령 따라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당해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 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이면서 60세 미만인 자(1967. 1. 1. 이후 출생자)
- **학 력** : 제한 없음
- **거주지 요건** : 아래의 ①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주민등록표 기준)

- ① 2026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
※ 같은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② 2026년 1월 1일 이전까지 부산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 **신체조건** : 다음 각 호의 신체조건을 갖춘 자(「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일정에 따라 채용신체검사서(또는 취업용건강진단서) 및 배치 전 특수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자격(신체조건)에 미달되거나 각 건강검진결과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기 타**
 - 주·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27년 임용예정자는 '27.1월 임용예정이며, 임용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3 시험 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2026. 7. 29.(수) ~ 7. 31.(금) (3일간)	1차	필기시험	2026. 8. 29.(토) 10:00~10:40	2026. 8. 21.(금) 별도 공고 예정	2026. 9. 9.(수)
		체력검정	2026. 9. 15.(화) ※ 우천시 별도 공지 예정	사직아시아드 주경기장(예정)	2026. 9. 18.(금)
	2차	서류접수	2026. 9. 28.(월) ※ 체력검정 과락자 제외		
		서류심사	-	내부평가 (응시자 미참석)	2026. 10. 16.(금)
	3차	면접시험	2026. 10. 26.(월) ~ 2026. 10. 28.(수) 中 1일	부산광역시청 12층 국제회의장	2026. 11. 11.(수)

- ※ 시험 일정은 시험 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 향후 시험 일정,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채용공고 (<https://www.busan.go.kr/nbincruit>) 게시판에 공고
- ※ 필기시험 성적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본인 성적에 한해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채용 홈페이지 (<https://busan.recruitcenter.kr>)에서 확인 가능

4

응시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접수기간 : 2026. 7. 29.(수) 09:00 ~ 7. 31.(금) 18:00
 -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 단 접수 시작일은 09:00 시작, 마감일은 18:00 마감
- 접수취소기간 : 2026. 7. 29.(수) 09:00~ 7. 31.(수) 17:00
- 접수방법 :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채용 홈페이지(<https://busan.recruitcenter.kr>)에서 인터넷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채용 홈페이지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
 - ※ 접수 및 취소문의 : 채용 홈페이지 Q&A 게시판에 개별 문의
- 응시수수료 : 없음(무료)
- 응시원서 사진 등록
 - 사진파일 규격은 가로 3.5cm × 세로 4.5cm, 해상도 100 DPI 이상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 시 응시자 본인 얼굴이 사진에 정면에 나타나고 본인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 ※ 모자·선글라스 착용, 배경사진 등은 사용 불가. 본인 사진 여부 및 사진 방향 확인 후 등록
-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 마감 이후에는 변경 불가
 - 응시표 출력은 2026. 8. 21.(금)부터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채용 홈페이지(<https://busan.recruitcenter.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분실 시 재출력 가능)

5

가산점 적용

○ 적용 대상

구 분	배 점	근 거
취업지원 대상자	필기시험, 체력검정, 서류심사 만점의 10% 또는 5% (전형별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의사상자 등	필기시험, 체력검정, 서류심사 만점의 5% 또는 3% (전형별 적용)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방법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인터넷 원서 접수 시 가산비율과 자격번호(보훈번호 또는 중서번호)를 반드시 입력하고, 증빙 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응시자 부주의로 입력을 누락했을 경우 가점되지 않으며, 그에 대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적용 예외

- (가점합격 상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 예정 인원의 일정 비율 초과 불가
 - ▶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의 30% 초과 불가
 - ▶ 의사상자 등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의 10% 초과 불가
 - ※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중복가점 불가)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1개만 적용
- (필기시험 과락) 필기시험(1차)의 경우, 원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음
- 기타 가산점 적용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 지침」,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령·지침에 따름

6

시험방법

※ 차수별 시험 일자는 시험 일정 항목(p.2) 참고

○ 필기시험(1차) : 응시원서 접수자 전원

- 시험과목 : 민간경비론(객관식 40문제, 4지 택1형) 단일과목, 시험시간 40분 ※문제 비공개
- 출제범위 : 민간경비론 및 청원경찰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 합격기준 : 100점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중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범위에서 선발
단, 동점자가 있을 때는 동점자까지 포함하여 선발(40% 미만은 과락)

○ 체력검정(2차) : 필기시험 합격자 <붙임 2> 참조

- 시험과목 : (3개 종목) 1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 합격기준 : 각 종목의 점수를 종합한 결과 18점 이상인 경우를 합격자로 함
단,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개인별 절대평가)

《 측정기준표 》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자	100m 달리기 (초)	13.0 이내	13.1 ~ 13.5	13.6 ~ 14.0	14.1 ~ 14.5	14.6 ~ 15.0	15.1 ~ 15.5	15.6 ~ 16.0	16.1 ~ 16.5	16.6 ~ 16.9	17.0 이후
	윗몸일으키기 (회/1분)	58 이상	57 ~ 55	54 ~ 52	51 ~ 49	48 ~ 46	45 ~ 43	42 ~ 40	39 ~ 36	35 ~ 32	31 이하
	좌우 악력 (kg)	64 이상	63 ~ 61	60 ~ 58	57 ~ 55	54 ~ 52	51 ~ 49	48 ~ 46	45 ~ 43	42 ~ 40	39 이하
여자	100m 달리기 (초)	15.5 이내	15.6 ~ 16.3	16.4 ~ 17.1	17.2 ~ 17.9	18.0 ~ 18.7	18.8 ~ 19.4	19.5 ~ 20.1	20.2 ~ 20.8	20.9 ~ 21.5	21.6 이후
	윗몸일으키기 (회/1분)	55 이상	54 ~ 51	50 ~ 47	46 ~ 43	42 ~ 39	38 ~ 35	34 ~ 31	30 ~ 27	26 ~ 23	22 이하
	좌우 악력 (kg)	44 이상	43 ~ 42	41 ~ 40	39 ~ 38	37 ~ 36	35 ~ 34	33 ~ 31	30 ~ 28	27 ~ 25	24 이하

※ 100m 달리기 경우, 측정값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좌우악력의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서류심사(2차) : 체력검정 합격자 중 서류제출 한 응시자에 한함

- 심사방법 : 내부 배점 기준표에 의거하여 점수 부여 ※ 응시자 참석 불필요
- 심사항목 : 관련 자격증(일반·기계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1,2급 중 높은 배점 1개만 인정),
무도단증(2단 이상, 높은 배점 1개만 인정), 관련 학과 졸업 여부
※ 세부사항은 서류제출 안내(p.6) 항목 참조
- 합격기준 : 체력검정 성적 60%로 환산, 서류심사 성적 20%로 환산, 필기시험 성적을
20%로 환산하고,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
에서 면접대상자 선발함. 단, 동점자가 있을 때는 동점자까지 포함
하여 선발

○ 면접시험(3차) : 2차시험(체력+서류+필기) 합격자에 한함

- 이전 단계 시험의 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 정신자세, 직무 관련 지식, 발전 가능성 등을 질의·응답으로 평가하며, 평정
요소에 따라 '탁월·우수·보통·미흡'으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5개 항목)

※ 면접시험 평정표에 따른 집단면접(2인 또는 3인 1조) 실시

- | | |
|-----------------------|---------------------|
| ①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 ② 직무 관련 지식과 그 응용 능력 |
|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⑤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 발전 가능성 | |

- (불합격 기준)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의 항목을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또는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하고, 추가합격자 대상에서도 제외함
- (최종합격 기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탁월'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단, '탁월'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우수'의 개수가 많은 순, '우수'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보통'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처리 기준

- | | |
|---|----------------------------|
| ① 취업지원대상자 중 가산 비율이 높은 순 | ② 의사상자 중 가산 비율이 높은 순 |
| ③ 체력검정 결과에 따른 고득점자순 | ④ 필기시험 결과에 따른 고득점자순 |
| ⑤ 자격증 소지자 중 배점 비율이 높은 자 순 | ⑥ 공인무도 유단자 중 배점 비율이 높은 자 순 |
| ⑦ 관련학과 졸업자 중 배점 비율이 높은 자 순 ⑧ 고령자 순(출생연도가 동일할 경우 출생월일이 빠른 순) | |

※ 위의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점자 판별이 되지 않을 시, 해당 인원 대상으로 재면접 실시

- 접수일자 : 2026. 9. 28.(월) ※ 접수시간 및 장소 추후 공고
- 제출대상 : 체력검정 합격자 전원
- 제출방법 : 합격자 본인이 제출서류 지참 제출
 - 제출서류는 서류심사, 면접시험 참고자료이므로 반드시 시간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생은 포기자로 간주됩니다.
 -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제출도 가능하나 대리인과 응시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 제출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관련 서류는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nbincruit>) 「채용공고」 게시판에서 내려받기

- ① 응시자 기본정보 및 서류 목록표 <서식 제1호>
- ② 이력서 <서식 제2호>
 - ※ 경력사항 기재 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첨부
- ③ 자기소개서 <서식 제3호> ※ 학력, 생년월일 등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요소 작성 금지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제4호>
- ⑤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 ※ 주소 변동내역, 병역사항 등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나. 우대사항(2차시험 중 서류심사에만 적용하며,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우대사항	내 용	
무도단증	대상	■ 공인무도 단증 소지자 :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2단 이상 ▷ 가장 높은 단증 1개만 인정하며, 인정되는 무도단체는 「2026년 제1차 경찰 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준용 ▷ <붙임 1>의 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만 인정함
	증빙자료	■ 단증 사본 ▷ 급수가 높은 2개까지 제출할 수 있으나, 가장 높은 것만 인정 ▷ 서류제출일 이전 발급분 제출
관련 자격증	대상	■ 일반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1급, 2급)에 한함
	증빙자료	■ 해당 자격증 사본 ▷ 서류제출일까지의 발급분 제출
관련학과 졸업자	대상	■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과 ▷ 경호학과, 경호비서학과, 경호정보학과, 안전경호학과, 경호안전학과, 경호경찰학과, 경찰학과, 경찰무도학과 등
	증빙자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명서), 동일계통 학위(학과) 증명서 <서식 제5호> ▷ 동일계통 학위(학과) 증명서는 취득한 학위가 우대사항의 관련 분야 학위(학과) 명칭과 상이한 경우 제출 ▷ 학위(학과)명에 "경찰", "경호", "방호", "경비" 단어 포함 시 제출 불필요 ▷ 2026. 8월 학위취득(졸업)자까지만 인정되며, 이후 취득(졸업)예정자 또는 학위과정 수료자는 인정하지 않음
※ 심사 배점은 무도단증 10점 자격증 8점 관련학과 2점으로 구성(총 20점 만점, 분야별 배점은 내부기준에 따라 부여)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제11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는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종합격자가 아닌 지원자는 최종합격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에 채용서류반환청구서(서식 제6호)를 작성하여 전자우편(passionately@korea.kr)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여 드리며,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채용서류는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접수여부를 담당자에게 유선(☎051-888-1191)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채용서류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없어진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시청에 내방 하여 직접 반환받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으며, 등기우편으로 받을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따라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및 시험 단위별 세부계획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nbincruit>) 「채용공고」 또는 「고시공고」 게시판에 별도 공고합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당해 시험에만 적용되며, 향후 채용공고 시 각 전형별 평가 방법 및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체력검정·면접시험 응시자는 당일 지정된 시간까지 유효한 신분증과 응시표를 지참하시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공고문, 응시표, 답안지 등의 응시자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체력검정 시험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부정행위 포함)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주관 측에서는 이로 인한 불이익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자격증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시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최종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면접시험은 사진, 가족관계, 학교명 등 편견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고, 제출한 [붙임 3]의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블라인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채용 단위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신체 검사 및 신원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없을 시 최종적으로 채용이 결정됩니다.

-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최종합격자의 신체조건 미달, 임용포기, 임용 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퇴사 및 기존 인력의 의원면직·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1년 내 청원경찰 채용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2026년도 하반기 채용시험의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단, 해당 시험의 최종합격자 중 「청원경찰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용승인 신청에 대한 불승인·반려로 인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기한에 상관없이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인사과 공무원관리팀(☎051-888-1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무도 관련 자격증 인정단체 현황 1부.
2. 청원경찰 체력검정 시험 측정 방법 1부.
3. 공통 제출서류(서식 제1~5호) 각 1부(별첨).
4.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서식 제6호) 1부(별첨).

시험정보 제공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s://busan.recruitcenter.kr>)

붙임 1

무도 관련 자격증 인정단체 현황(60개)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1개)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가라테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레슬링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씨름협회	

※ 「대한크라쉬연맹」은 2023. 12. 3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48개)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해동검도협회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대한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대한종합격투기연맹	천무극협회	대한삼보연맹
경찰무도교육원	대한삼단봉협회	대한프로복싱협회
세계프로킥복싱무에타이총연맹	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대한이종격투기연맹
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	대한크라브마가협회	대한킥복싱협회

※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한국해동검도연합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는 2025. 2. 6.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세계합기도협회」,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現대한민국합기도지도자협회)」, 「대한검도연합회」, 「한국무예진흥원」,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대한민국특공무술중앙협회」, 「대한민국경찰무도연맹」은 2025. 7. 1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개)

택견보존회

붙임 2

청원경찰 체력검정 시험 측정 방법

종 목	측 정 방 법 등
100m 달리기	○ 측정 장비 : 100m 직선주로, 계측기, 출발신호기 ○ 측정 기록 : 초 (1/10초 단위) ○ 측정 방법 -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동시 출발 - 1회에 한하여 응시 가능(넘어지더라도 추가 실시 없음)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계측원은 출발신호기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주자의 몸통이 결승선 위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을 1/10초 단위로 계속 기록한다.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림) - 단, 넘어졌을 때는 몸통의 일부가 결승선 상에 있을 경우는 유효하다.
윗몸 일으키기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0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악 력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측정방법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실기시험 위원이 결정하며, 모든 응시자는 이에 따라 실기시험을 진행하여야 함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음

※ 체력시험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주관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